

# 2021년도 제1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5. 13.(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0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565건(안건번호 제2021-49574호~5080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49574호~49591호(순번 1번~18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만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만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49592호~49596호, 49598호호~49612호, 49614호~49615호(순번 19번~23번, 25번~39번, 41번~42번)는 블로그에 음원 파일을 게시한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장려하여 광고수익을 취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가결함. 다만 안건번호 49597호(순번 24번), 49613호(순번 40번)는 음악 게시물의 주된 목적이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이 아닌 게시자의 자기표현에 있는 점,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이 지나치게 제약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39616호~50801호(순번 43번~1228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511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

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50802호(순번 1229번)는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안전번호 50801호(순번 1228번)와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사안이므로 부결함. 안전번호 50803호~50809호(순번 1230번~1236번)는 SNS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영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10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전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전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565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1236번

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18번은 실명(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만화를 무료 또는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 '□□□□□' 등을 각각 무료로 제공 또는 3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22개 게시물임.

(순번 10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3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제1화~제157화를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18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18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9번~4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24건). ♣♣♣♣♣ 운영자가 가수에 관한 게시물을 주로 작성하면서 게시물에 음원 전체분량의 mp3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복제·전송한 사안임.

(순번 24번과 40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가수 '▷▷▷▷▷', '◁◁◁◁◁', '●●●●●' 등의 음악저작물 음원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게시하고 있음. 순번 24번은 게시자의 여행을 기록한 일기에 음원 파일이 첨부되어 있으며, 순번 40번은 가수의 소개와 사진이 함께 게시되어 있고 두 게시물 모두 광고는 게재되어 있지 않음. 위 2건을 제외한 22건 게시물의 경우 모두 동일한 게시자의 게시물로서, 제목에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일률적으로 음반사가 제공하는 공

식 앨범 정보, 가수의 뮤직비디오 캡처 화면, ●●●● 공식 채널에서 제공하는 뮤직비디오 등의 임베디드 링크, 간단한 감상, 가사, 다운로드 파일, ◆◆◆◆ 파워링크 광고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악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저작권자인 작곡가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전송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하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원 파일을 블로그 게시물에 첨부 형태로 업로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배포하고 있으며, 음악저작물 전체 분량을 이용하고 있음. 스트리밍 형태로 게시물 내에서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복제·전송하는 형태와 비교하여 볼 때, 파일 형태의 복제·전송은 게시물을 벗어나더라도 해당 음악저작물을 계속하여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장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큼. 이러한 형태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순번 24번의 경우 게시물의 주된 목적이 게시자 본인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게시자가 직접 작성한 글과 촬영한 사진이 게시물 내용의 대부분인 점, 순번 40번의 경우 해당 가수의 팬이 작성한 게시물로 함께 이용된 가수의 사진 등은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러한 게시물 전체에 대하여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저작물을 복제·전송함으로써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즉 시장대체가능성을 가장 주된 고려요인으로 볼 수 있음.
- B 위원: 침해의 양상이 경미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A, C,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9번~23번, 25번~39번, 41번~42번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순번 24번과 40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43번~122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기묘한 이야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75번은 모바일웹하드에서 방송 '기묘한 이야기'를 730포인트에 제공 중임. 시즌 1~시즌 3 전편을 제공하고 있음. 미국 넷플릭스에서 2016. 7. 15.

공개한 미국 드라마임. 미국 인디애나주의 작은 마을 호킨스에서 어느 날 한 소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소녀와 마을에서 목격되는 초자연적 현상을 다룬 이야기임. 넷플릭스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방송 '빈센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789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빈센조'를 288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 1시간 21분 20초를 제공하고 있음. tvN에서 2021. 2. 20.~2021. 5. 2. 공개한 한국 드라마임. 조직의 배신으로 한국으로 오게 된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가 베테랑 독종 변호사와 함께 악당의 방식으로 악당을 쓸어버리는 이야기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방송 '강철부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947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강철부대'를 84포인트에 제공 중임. 제6회의 전체분량인 1시간 18분 30초를 제공하고 있음. 채널A에서 2021. 3. 23. 부터 매주 방송 중인 예능 프로그램임.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팀을 이뤄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순번 1229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22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순번 1228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순번 1228번과 중복으로 심의요청된 사안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43번~1229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1229번은 부결하고, 순번 43번~1228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없이 저작권법 제 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229번은 부결하고, 순번 43번~122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230번~123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긴급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 공개한 영화 ‘▲▲▲▲▲’와 ■■■■■ 공개한 영화 ‘★★★★★’이 공개와 동시에 불법복제물이 유통됨에 따라 보호원은 해당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 심의를 요청함. 심의일 기준 오전 9시까지 심의 요청된 총 7개 게시물을 추가하여 보고 드리겠음.  
(순번 1230번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에서 영화 ‘▲▲▲▲▲’를 게시한 사안임. 영화 전체분량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1233번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에서 영화 ‘★★★★★’을 게시한 사안임. 영화 전체분량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신 영화를 복제·전송함으로써 해당 영화의 합

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순번 1230번~1236번은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1230번~1236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1230번~1236번은 최신 영화 저작물로서,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230번~123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50802호(순번 1229번)는 부결함. 제2021-49597호(순번 24번)와 제2021-49613호(순번 40번)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49574호~49596호, 49598호~49612호, 49614호~50801호, 50803호~50809호(순번 1번~23번, 25번~39번, 41번~1228

번, 1230번~1236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5. 20.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